



재해 개요

- 2023. 2. 1.(수) 7:27경, 충북 □□시 △△동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피해자가 수직구 Top 슬라브 철근배근 작업 준비 중 맨홀 개구부에 덮여 있던 합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2층 바닥으로 떨어져(H ≍ 6.4m)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개구부의 추락방호조치 미흡**
 - 수직구 최상부 PC 슬라브에는 개구부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개구부로 떨어질 경우 충고가 높아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임에도, 수직구 TOP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 시 ①근로자가 개구부로 떨어질 위험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조치하거나 ②추락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추락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
- 위험성 감소대책 검토·이행 미흡**
 - 수직구 TOP 슬라브 상부 철근 배근 작업 시 개구부 덮개를 제거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은 기존 수직구 작업 중에 발생하였던 위험요인과 동일한 위험요인이었음에도, ①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절차가 미흡하게 실시되었고 ②수시 및 일일평가를 통해 마련된 위험성 감소대책(개구부 덮개 설치, 해체 시 관리감독자 검토·승인 등) 이행 확인 또한 미흡하게 실시됨



재해 예방 대책

- 개구부의 추락방호조치 실시**
 - 사고발생 장소와 같이 PC 슬라브 개구부 덮개가 상부 철근 배근 작업과 간섭되어 작업 중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, 작업 전 개구부 덮개를 PC 슬라브 하부에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추락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락방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
-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 확인 실시**
 - 위험성평가 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작업 방법 및 순서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수립된 위험성 감소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